

제 5 장

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

제 5.1 조

목적 및 원칙

이 협정상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대한민국과 인도 간 양자적으로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데 협력할 목적으로, 양 당사국은 모두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상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운영하는데 합의한다.

- 가.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에 대한 수요와 사회 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및 원활화간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, 절차는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간소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
- 나. 통관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게 한다.
- 다. 당사국이 절차에 대한 중대한 개정을 채택하기 전 그 당사국 무역업계 대표와의 협의를 포함한다.
- 라. 절차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증진함으로써 법규준수 노력에 집중하기 위한 위험평가원칙에 기초한다.
- 마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한 무역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호협력·기술지원 및 우수관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.

제 5.2 조

상품의 반출

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 반출을 위한 간소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2.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.
 - 가.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의 완료시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

정하는 절차

- 나. 가능한 한도에서, 도착시 상품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이전에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
- 다. 금지·통제 또는 규제되는 상품을 제외하고, 수입자가 수입된 상품을 보세창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시설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수입 지점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절차, 그리고
- 라.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 상품의 수입과 연관된 관세·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납부에 대하여 담보·예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자가 상품을 일시적으로 반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

3. 각 당사국은 긴급을 요하는 상품이 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동안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4. 양 당사국은 쿼터 대상 상품 또는 건강 관련 또는 공공안전 요건 대상 상품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하여 또는 특정 상황 하에서, 관세당국이 상품 반출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시에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.

5. 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자국의 각 기관의 요건이, 관계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관계기관을 대신하여 관세당국에 의하여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,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되도록 보장하는데 노력한다. 이 목적의 증진을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필요 서류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의 각 기관의 서류 제출 요건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.

6. 양 당사국은 보다 나은 협력 증진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, 무역 및 비즈니스 업계와의 협의 수단을 마련한다.

제 5.3 조 자동화

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,

- 가. 전자시스템이 세관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 그리고
- 나. 세계관세기구(이하 “WCO”라 한다)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의 개발을 포함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.

제 5.4 조

위험 관리

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분석 및 선별을 위한 전자적인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제 5.5 조

특송화물

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 이를 절차는 가능한 한도에서,

- 가.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, 적용 가능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화물즉시반출지침을 이용한다.
- 나. 도착 즉시 특송화물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특송화물의 물리적 도착 이전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다. 그리고
- 다.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, 특송화물에 대한 간소화된 서류 요건을 규정한다.

제 5.6 조

투명성

1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·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, 인터넷상을 포함하여, 공표한다.
2.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

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,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.

3. 가능한 한도에서,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,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제 5.7 조 불복청구

1.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및 사법적 재심 또는 상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.

2.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, 모든 이해당사인은 자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.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, 각 당사국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행정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한다.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재심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의 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,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제4.15조(비밀유지)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3.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상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.

제 5.8 조 사전심사

1.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 내의 수입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, 자국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전, 다음사항에 관한 사전심사 결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하도록 노력한다.

가. 상품의 품목분류

나. 상품의 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채택된 원칙

- 다. 상품의 원산지 결정, 또는
 - 라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
2. 각 당사국은 심사 신청 처리에 요구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, 그러한 사전심사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3. 자국의 법과 규정상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사전심사를, 예컨대 인터넷에 공표한다.
4. 무역원활화를 위하여,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양자간 대화에서 제1항에 열거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 각각의 법과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.

제 5.9 조 관세협력

- 1.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 우수 관행을 채택할 것을 약속하며, 이는 선진 통관절차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.
- 2.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인 이동의 원활화에 대한 당사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협정에 따라 통관기법·자동화 및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.
- 3. 양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.
 - 가. 양 당사국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, 상품의 수입·수출 및 일시 경유에 관한 통관 관련 사안에 있어서,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 및 데이터 요소의 국제표준에 따른 조화를 추구하는 것
 - 나. 양 당사국의 관세연구소 및 과학부서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
 - 다. 양 당사국간 세관직원을 교환하는 것
 - 라.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
 - 마. 무역 및 비즈니스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
 - 바.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제3장(원산지 규정)에 규정된 요건

- 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양 당사국 모두가 일관적으로 행
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검증 표준 및 체제를 개발하는 것
- 사.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, 특혜관세 대우의 목적으로, 상품의 품목분류·
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 상호 조력하는 것, 그리고
- 아.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제도를 활성
화시키는 것

4. 각 당사국은, 요청이 있을 경우, 당사국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
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. 양 당사국은 양
당사국간 품목분류에 관한 불일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협의한다.

제 5.10 조 관세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관세 관련 사항을 다루는 관세위원회를 설
립하는데 합의한다.
- 가. 제3장(원산지 규정)·제4장(원산지 절차)·이 장 및 통일규칙의 통일
적 해석·적용 및 운영
- 나. 원산지 결정에 관한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
- 다. 원산지 규정의 검토
- 라. 제4.11조부터 제4.13조까지의 통일적 해석·적용 및 운영을 보장하기
위하여 원산지 검증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의 개발, 그리고
- 마.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·양 당사국 또는 공동 위원회가 관세위원회에
회부한 그 밖의 관세 관련 사안을 고려
2. 관세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
요구에 따라 그리고 최소 매년 1회 대한민국과 인도에서 번갈아 회합한다.
3. 관세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
로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한다.
4. 관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해결책·권고사항 또는 의견을 공식
화하고 양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5.11 조

관세접촉선

각 당사국은 이 장 및 그 밖의 관련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. 관세접촉선을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, 그 사안은 제 5.10조에 규정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.